

대면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현장실습  
강화

대면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현장실습  
강화

문의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д.childcare.go.kr>  
(재)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1661-5666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시행시기 : 2016년 8월 1일



## 주요 변경사항

### ○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변경

####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 ① 보육필수(6과목)
- ② 발달 및 지도(1과목 이상)
- ③ 영유아교육(6과목 이상)
- ④ 건강·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
- ⑤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1과목 이상)
- ⑥ 보육실습



#### 교사 인성 등 3개 영역

- ① 교사인성 (2과목 필수)
- ② 보육 지식과 기술 (9과목 필수, 4과목 선택)
- ③ 보육 실무(2과목 필수)

### ○ 대면교육 강화

-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총 9과목)  
(교사인성 영역 2과목,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5과목, 보육실무 영역 2과목)
- 대면교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

### ○ 보육실습 기준 강화

#### 4주 160시간 실습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 6주 240시간 실습

정원 15인 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 함

- 교사 인성 영역 필수 2과목(6학점)**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9과목(27학점)**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선택 4과목(12학점) 이상**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보육 실무 영역 필수 2과목(6학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17과목 51학점 이상

## 대면 교과목

- 실시방법**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단, 「보육실무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구분	교과목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보육실습 기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b>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b>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접속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에서 보육실습 내용 입력 → 보육실습확인서 온라인 제출 후 출력 →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 자격증 신청 시 제출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3조)

-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은 2017.1.1.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2017.1.1.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대상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대상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한 경우로 인정받습니다.

**대상 교과목**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기존의 유사교과목인정 범위(기존 인정기준 유지)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 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 종전기준 대상자가 개정기준에 따른 교과목 이수 시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적용대상(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 ① 2017.1.1. 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② 2018.1.1. 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상 교과목 : 아동복지(론),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영유아교육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 2016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한 사람, 또는 2017년에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아동복지(론)” 대신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인정

※ 2017.1.1.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입학자 및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학위 취득자부터는 개정된 교과목명으로 이수 필수 교과목 명이 다른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에 따름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종전기준 대상자가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 방법

▷적용대상 : 2014.1.~2016.12. 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구 분	인정기준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영아발달”, “유아발달” 2과목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발달 +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영유아발달 + 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사례 1** 2015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하여 “영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2016년에 휴학, 2017년에 복학하여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학점)”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유아발달(3학점)” 이수 시 보육필수 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 2** 2016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입학자가 보육필수 영역에서 “아동복지(론)(3학점),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과정(3학점), 보육교사론(3학점)” 교과목을 이수하고 휴학, 2018년에 복학하여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학점)”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유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1과목(3학점)”를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할 경우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개정기준 대상자의 「영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방법

▷적용대상(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 ① 2017.1.1.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②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인정기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유아발달	영아발달 + 유아발달 이수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로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사인성’,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실무’ 각 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사례 1** 2017. 3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유아발달”, “영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완료한 경우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 2** 2018. 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6년에 “유아발달”, “영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완료 한 경우  
→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교육과정 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5])

※ 과목당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며,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2급의 실습 기준을 준용

### 교사 인성 영역 필수 2과목(6학점)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18과목(52학점)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 교수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 관리(3학점)

### 보육 실무 영역 필수 2과목(7학점)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22과목 65학점 이상

##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4조)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보육교사 2급

**질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2015년도 3월에 입학하여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해 대면교과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

- 2015년도 3월에 입학하여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아래의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 (해당 교과목)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질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편입학 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편입학 하는 경우 편입학하는 학년과 같은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시) 2017년 1월 1일 이후 2015년 입학생들과 같은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2015년 입학생에게 제공되는 자격기준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변경된 자격기준의 대면교과목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육교사 2급

**질문**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2018년 2월에 학위 취득을 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 개정규정에 따라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2018. 2월에 학위취득을 하는 경우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 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받습니다.
- ※ (해당 교과목)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질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2015년도 3월에 입학하여 ‘영아발달’을 이수한 후 휴학하였습니다. 2017년 9월에 복학예정입니다. 보육필수영역에서 ‘유아발달’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과정이 변경되어 해당과목이 폐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하여 교육과정 변경으로 “유아발달”과 “영아발달” 중 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새로 개설된 “영유아발달(3학점)”을 이수하면 보육필수영역 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유아발달”과 “영아발달” 두 교과목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영유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면 인정됩니다.

## 보육교사 2급

**질문** 2018년 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 이미 “영아발달”과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저는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영아발달”과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도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2018.1.1. 이후 학위취득자라도 “영아발달”과 “유아발달” 두 개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했다면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출석 수업의 8시간을 몇 차례에 나누어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출석 수업의 운영방식은 교육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교과내용 중 대면수업이 필요한 주요내용을 대면수업으로 총 8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1회 이상 출석 시험은 8시간 출석 수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육교사 3급

**질문** 보육교사 3급 취득을 위해 변경된 교육과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 2016년 8월 1일 이후 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한 경우, 변경된 교육과정(보육실습 포함)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 보육실습

### 1회차 보육실습 기준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보육실습은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되, 현장실습과 함께 보육실습의 내용과 방법 등을 이론수업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은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실습은 교육 편의를 위하여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실습기간을 나누는 방식(2주+4주, 3주+3주, 4주+2주 등)은 교육기관과 어린이집에서 협의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 2회차 보육실습을 이수할 수 있는 실습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보육실습을 이수할 수 있는 실습기관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또는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이수할 있습니다.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어린이집 찾기▶평가인증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회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2015년에 입학하여 보육실습 교과목은 2017년 1학기에 이수하고, 교과목 이수 전 방학인 2016년 12월 26일부터 보육 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보육 실습을 6주 240시간 실시해야 하나요?

- 보육실습 교과목은 2017년 1학기에 이수하더라도 보육현장실습을 2016년 12월부터 시작하는 경우 4주, 160시간으로 실습을 실시하면 됩니다. 단, 보육현장실습을 2017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경우 개정기준(6주, 240시간)에 따라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습은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보육실습

### 1회차 2017년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I, II로 나누어 개설하고 보육실습 I 교과목 이수 시 3주(120시간), 보육실습II 교과목 이수 시 3주(120시간)로 나누어 실습을 이수할 수 있나요?

- 학기를 달리하여 두 개의 보육실습 교과목(I, II)을 개설한 경우 현장실습은 각 개설 학기에 1회씩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현장실습은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2회의 현장실습 기간의 합이 6주 240시간이면 인정됩니다.

### 2회차 2017년도 1학기에 보육실습 I, 2017년도 2학기에 보육실습II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은 각각 2학점과 1학점으로 나누어 이수한 경우 합산하여 인정되나요?

- 보육실습 I, II의 합이 총 3학점(최소 2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3회차 현장실습 시작 시점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으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이어야 하므로 현장실습 기간 중 또는 실습종료 후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